

※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

■ 신청자격
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에 의거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

추천대상자	청약통장 구비여부
-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민	청약통장 필요 없음
- 북한이탈주민, 장기복무 제대군인, 10년이상 복무군인, 우수기능인, 중소기업근로자, 공무원, 의사상자, 납북피해자, 다문화가족, 우수선수, 체육유공자	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

※ 해당기관(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) 예시

수원보호지청(국가유공자), 해당 시·도(장애인),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북한이탈주민), 국가보훈처(장기복무 제대군인), 국방부(10년 이상 복무군인), 한국산업인력공단(우수기능인), 경기지방중소기업청(중소기업근로자), 공무원연금관리공단(공무원), 경기도(의사상자), 통일부(납북피해자), 경기도(다문화가족), 대한체육회(우수선수), 체육유공자(국민체육진흥공단) 등

■ 유의사항

-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·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장소(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3-6번지)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.[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 배정) 및 계약불가]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의 특별공급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(‘10.2.23)이전에 “3자녀 우선공급” 및 “노부모부양 우선공급”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.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. 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 제1항 제3호, 제4호,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)

■ 당첨자 선정방법

- 당첨자에 대한 동·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·층별·항별·층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.(미신청, 미계약 동·호 발생 시에도 동·호 변경불가)
-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,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·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.
-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**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,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**됩니다.